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76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576
----------	------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7.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대상: 3개소

시 설 명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2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도안수목토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위 치	배재로 53(정림동)	배재로 55(도마동)	도안동로 177(도안동)
면 적 (m ²)	66.11 m ²	103.45 m ²	182 m ²
정 원	14명	24명	45명
운 영 인 력	2명	2명	3명
무상임대협약 (임대차기간)	2026. 4. 29. (의무설치 대상으로 기간미정)		2026. 4. 29. (개소일 ~ 5년간)
개 소 예 정	2026. 10.		

- 위탁개요
 - 위탁기간: 개소일로부터 5년간
 - 위탁범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선정: 공개모집(8월중) 후 지역돌봄협의체 심의
 -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심사표 붙임2)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자 중에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
 - 소요예산: 495,989천원(예상) / 인건비, 운영비 등

- 연간 소요예산(안)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예산과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천원)	비고
계		294,614	
운영비	- 일반운영비: 1,030,000원×2개소×12개월=24,720천원 - 프로그램운영비: 500,000원×2개소×12개월=12,000천원	36,720	국50, 시25, 구25 구100
소 계		230,534	
인건비	기본급		
	- 센터장: 3,342,000×2명×12개월=80,208천원 - 돌봄교사: 3,102,000×2명×12개월=74,448천원	154,656	국50, 시25, 구25
	- 추가인력(3시간 시간제 교사) 12,290원×79시간×2개소×12개월=23,302천원	23,302	시50, 구50
인건비	특별수당		
	- 특별수당: 100,000원×2명×2개소×12월=4,800천원 - 정액급식비: 50,000원×2명×2개소×12월=2,400천원 - 호봉제적용분: 250,000원×2명×2개소×12월=12,000천원 - 가족수당: 150,000원×2명×2개소×12월=7,200천원 - 명절휴가비: 3,222,000원×2명×2개소×2회=25,776천원 - 건강검진비: 200,000원×1명×2개소=400천원	52,576	시50, 구50
방학중 중식비	-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단지: 9,000원×80일×14명=10,080천원 -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2단지: 9,000원×80일×24명=17,280천원	27,360	시50, 구50

■ 도안수목토아파트

예산과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천원)	비고
계		201,375	
운영비	- 일반운영비: 1,030,000원×1개소×12개월=12,360천원 - 프로그램운영비: 500,000원×1개소×12개월=6,000천원	18,360	국50, 시25, 구25 구100
소 계		165,735	
인건비	기본급		
	- 센터장: 3,342,000×1명×12개월=40,104천원 - 돌봄교사: 3,102,000×2명×12개월=74,448천원	114,552	국50, 시25, 구25
	- 추가인력(3시간 시간제 교사) 12,290원×79시간×1개소×12개월=11,651천원	11,651	시50, 구50
인건비	특별수당		
	- 특별수당: 100,000원×3명×1개소×12월=3,600천원 - 정액급식비: 50,000원×3명×1개소×12월=1,800천원 - 호봉제적용분: 250,000원×3명×1개소×12월=9,000천원 - 가족수당: 150,000원×3명×1개소×12월=5,400천원 - 명절휴가비: 3,222,000원×3명×1개소×2회=19,332천원 - 건강검진비: 200,000원×2명×1개소=400천원	39,532	시50, 구50
방학중중식비	- 9,000원×80일×24명=17,280천원	17,280	시50, 구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제6조(위탁 적정성 검토), 제7조(의회 동의)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2026년 10월 개소 예정인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1, 2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도안수목도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지역돌봄협의체 심의를 통해 수탁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운영전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임.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설치 예정인 두 시설은 초등학교 인근 및 공동주택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검토 결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576
----------	------

제출년월일: 2026. 7. 9.
제출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 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운영
- 나.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탁),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의회 동의)
- 다. 추진 필요성
-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관리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위탁시설의 개요

시 설 명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 원 1단지 내 다함께돌봄센 터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 원 2단지 내 다함께돌봄센 터	도안수목토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위 치	배재로 53(정림동)	배재로 55(도마동)	도안동로 177(도안동)
면 적 (m ²)	66.11m ²	103.45m ²	182m ²
정 원	14명	24명	45명
운 영 인 력	2명	2명	3명
무상임대협약 일 (임대차기간)	2026. 4. 29. (의무설치 대상으로 기간미정)		2026. 4. 29. (개소일 ~ 5년간)
개 소 예 정	2026. 10.		

바. 위탁기간: 개소일로부터 5년간

사.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자 중에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

아. 소요예산: 495,989천원

자. 산출근거: 별첨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계획서 참조

3. 참고사항

가.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계획

나.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

- 치 및 운영), 제11조(위탁),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및 제6조(의회 동의)

등록번호	아동복지과 -31541	주무관	돌봄드림스타트 팀장	아동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6. 7. 7.						2026. 7. 7.
결재일자	2026. 7. 7.	정소윤	이기숙	김충희	안명옥	최동규	전문학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이경						
	조직평가팀장 설지은		예산팀장		강재형		

-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계획

추진개요

- (위탁대상)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도안수목토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개소일로부터 5년간
- (위탁범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선정) 공개모집 후 지역돌봄협의체 심의
- (소요예산) 연495,989천원(예산) / 인건비, 운영비 등



주 민 복 지 국
아동복지과/돌봄드림스타트

-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계획

- ▷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설치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탁),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5조(위탁 적정성 검토), 6조(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 추진배경

-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관리를 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현황

(2026. 6. 30.기준)

연번	개소일	시설명	정원	현원	위탁기간	수탁기관
계			275	268	5년 (재위탁 5년)	
1	2021.9.30.	느리울	24	16	2021.5.14.~2026.5.13. (2026.5.14.~2031.5.13.)	대전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법인 한여울복지재단)
2	2021.12.3.	도안아이파크	24	24	2021.5.14.~2026.5.13. (2026.5.14.~2031.5.13.)	대전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3	2021.12.17.	도안리슈빌	17	17	2021.5.14.~2026.5.13. (2026.5.14.~2031.5.13.)	대전사회서비스원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
4	2022.9.30.	더샵꿈나래	32	32	2022.5.24.~2027.5.23.	대전사회서비스원
5	2022.12.29.	정림	32	32	2022.9.29.~2027.9.28.	기독교대한감리회성산교회
6	2023.1.27.	예숨	24	24	2022.9.29.~2027.9.28.	영명침례교회
7	2023.12.5.	다운숲	24	24	2023.7.21.~2028.7.20.	(사)한겨레더갯기운동연합대덕지부
8	2024.9.9.	레이크포레	50	50	2024.9.9.~2029.9.8.	재단법인 대전 YMCA 유지재단
9	2025.2.3.	갈마	24	24	2025.2.3.~2030.2.2.	우리의꿈사회적협동조합
10	2025.3.17.	수밋들	24	24	2025.3.17.~2030.3.16.	학마을사회적협동조합

4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3개소
- (위탁기간) 개소일로부터 5년간
-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시 설 명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2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도안수목토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위 치	배재로 53(정림동)	배재로 55(도마동)	도안동로 177(도안동)
면 적 (m ²)	66.11m ²	103.45m ²	182m ²
정 원	14명	24명	45명
운 영 인 력	2명	2명	3명
무상임대협약일 (임대차기간)	2026. 4. 29. (의무설치 대상으로 기간미정)		2026. 4. 29. (개소일 ~ 5년간)
개 소 예 정	2026. 10월 중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근 거)

-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돌봄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위탁 운영 필요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설치장소의 장기(5년)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장소제공이 가능한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민간위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시 돌봄교사 인력 채용·정원 증원에 따른 조직 확대,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로 경제적 효율성 저하 우려
④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돌봄시설에 대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이 전문인력 수급으로 양질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위·수탁기간 만료 도래시, 매년 1회 실시하는 지자체 지도·점검 내역을 반영하고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8조 및 위·수탁 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등에 의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 내용 등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⑦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발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돌봄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결론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특성상 효율성·전문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 바,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6 세부 추진계획

① 수탁기관 모집

○ (모집기간) 2026. 8월 중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등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제출서류)

-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 ▶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 ▶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사본
-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전월세계약서, 주택가격확인원 또는 과세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유가증권 사본, 신용정보보고서
- ▶ 법인(단체) 구성원 및 시설장 예정자의 자격·경력사항 증빙자료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 법인(단체)의 시설 운영·사업추진 관련 증빙자료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위·수탁 협약서 사본(수탁 운영시설), 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등
- ▶ 법인(단체)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실적 자료
- ▶ 법인(단체) 행정처분 관련 자료

② 수탁기관 선정

○ (시 기) 2026. 8월 중

○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 및 면접 심사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기관 선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신청자 중에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심의위원회) 지역돌봄협의체 / 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직 위	분야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공무원	안명옥	주민복지국장	당연직
부위원장	유관기관	김재춘	서구그린어린이집원장	위촉직
위원	유관기관	권희청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위촉직
위원	유관기관	김지혜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장	위촉직
위원	공무원	김충희	아동복지과장	당연직
위원	유관기관	유영언	대전호수초등학교장	위촉직
위원	유관기관	이석호	대전정림초등학교장	위촉직
위원	전문가	이혜경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직
위원	전문가	최윤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촉직
위원	유관기관	허지연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위촉직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 운영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아동위원회 및 그와 유사한 위원회에서 심사 가능

○ (심사표)

심사지표	심사문항			배점	비고
수탁자의 적격성 (20점)	대표자의 전문성	사회복지사업관련 자격증 유무	있음	5	정량평가
			없음	0	
		사회복지사업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5	정량평가
			1년 이상 ~ 5년 미만	3	
	법인(단체) 운영 전담 상근 인력(대표자 제외)		2명 이상	5	정량평가
			1명	3	
	법인(단체) 설립목적의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		아동돌봄(보육)사업 목적 규정	5	정량평가
			그 외 사회복지사업 목적 규정	3	
	소 계			20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의지 (45점)	최근 3년 이내 법인(단체)의 아동돌봄(보육) 분야 사업운영 실적		5건 이상	10	정량평가
			2건 이상 ~ 4건 이하	8	
			1건 이하	4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20	정성평가
	법인 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목표 및 의지			15	정성평가
	소 계			45	
재정운영의 책임성 (25점)	법인(단체)의 순자산(자본) 보유 현황		3억원 이상	5	정량평가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	
			1억원 미만	1	
	수탁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 (자부담) 계획		연 300만원 이상	5	정량평가
			연 200만원 이상 ~ 연 300만원 미만	3	
			연 200만원 미만	1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타당성			5	정성평가
	예산 운영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평가
	소 계			25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10점)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및 자원 연계 방안의 타당성			10	정성평가
	소 계			10	
총 점				100	
감점항목 (-10점)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10	정량평가

③ 위 · 수탁 계약 체결

○ (시 기) 2026. 9월 중

○ (계약내용)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

○ (위탁기간) 5년간

7 연간 소요예산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한화포레나대전월평공원 1·2단지

예산과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294,614	
운영비	- 1,030,000원×2개소×12개월=24,720천원 - 500,000원×2개소×12개월=12,000천원	36,720	국50, 시25 구25 구100
인 건 비	소계	230,534	
	기본급	154,656	국50, 시25 구25
	- 센터장: 3,342,000×2명×12개월=80,208천원 - 돌봄교사: 3,102,000×2명×12개월=74,448원 - 추가인력(3시간 시간제 교사) 12,290원×79시간×2개소×12개월=23,302천원	23,302	시50, 구50
	특별수당	52,576	시50, 구50
방학중증식비		27,360	시50, 구50

■ 도안수목토아파트

예산과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201,375	
운영비	- 1,030,000원×1개소×12개월=12,360천원 - 500,000원×1개소×12개월=6,000천원	18,360	국50, 시25 구25 구100
인 건 비	소계	165,735	
	기본급	114,552	국50, 시25 구25
	- 센터장: 3,342,000×1명×12개월=40,104천원 - 돌봄교사: 3,102,000×2명×12개월=74,448원 - 추가인력(3시간 시간제 교사) 12,290원×79시간×1개소×12개월=11,651천원	11,651	시50, 구50
	특별수당	39,532	시50, 구50
방학중증식비		17,280	시50, 구50

8 향후계획

- (2026. 7. 20. ~ 7. 27.)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8. ~ 10.) 신규설치 장소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 (2026. 10.) 개소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아동복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대전광역시 서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2. 20.]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171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 11. 11., 2023. 12. 28.>

[전문개정 2020. 2. 25.]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수요와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1.]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12. 28.,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 042-288-2340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그 장을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 받는 사무로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 또는 그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